



# 협회 일보



제783호

2023.3.22.(수)

##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는 폐기물에서 제외
- ◇ 순환골재 사업장 외부보관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품질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예고기간 : '23.3.16~3.31, 주요내용 아래표 참조) 하였습니다.

### <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순환골재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7호)
  - 순환골재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천연골재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정의
- 순환골재 품질관리기준 강화 및 폐기물 제외 기준 마련(안 제35조)
  - 중간처리업자에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 및 품질검사 의무 부여
    - ※ 품질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품질기준 미준수 또는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 품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는 폐기물에서 제외
- 순환골재 사업장 외부보관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 순환골재를 사업장 외부보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후, 바닥·벽·지붕 등을 갖춘 보관 시설에 보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조치 허용
    - ※ 외부보관시설 설치기준, 예외사유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 환경부장관에게 순환골재 품질 등 관리·감독권한 부여(안 제35조의 3)
  - 환경부장관에 순환골재 품질 등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 및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한 자에 대하여 해당 순환골재 폐기 등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한편, 동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 순환골재의 사업장 외부 보관기준 및 예외적용 방법 등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협회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업계의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경기동부지회 지회장 이·취임식 개최>

2023년 3월 21일(화) 경기동부지회에서는 임동주 前 지회장과 박기선 신임지회장의 이·취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이·취임식에는 박하준 회장과 김금주 이사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축사를 통해 임동주 前 지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박기선 신임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하였습니다.

박기선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업계 발전과 회원사의 단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업계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협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취임식 전경>



<박하준 회장 축사>



<임동주 前 지회장과 박기선 신임 지회장 인사>



<이·취임식 참석자 기념촬영>

※ 왼쪽부터 박하준 회장, 박기선 신임지회장, 김금주 이사장